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3인 이상 가족농의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대한 특례 부여 등〉

■ 주철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831)

2025.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3인 이상 가족농의 영농조합법인 설립 등에 대한 특례 부여	2
2. 농업법인 등에 대한 통계조사 실시 근거 및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 ...	7
 [참고자료]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주철현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7. 30.
3. 회 부 일 : 2025. 7.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인 또는 어업인 등으로 하여금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소규모 가족 단위로 농어업을 경영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이 조합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제 혜택 등 국가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

한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법인 관련 기초자료 수집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통계조사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의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조합원 중 3인 이상이 가족 관계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효율성과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및 제20조의6 신설).

Ⅲ. 검토의견

1. 3인 이상 가족농의 영농조합법인 설립 등에 대한 특례 부여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최소 조합원수 5인 기준을 가족 관계에 있는 조합원인 경우에 한하여 3인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현행	주철현의원안
<신설>	제16조의4(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설립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중 3인 이상이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관계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제20조의3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어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의 공동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으로, 현행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¹⁾에서 최소 조합원수를 5인으로 규정하고 있음²⁾.

개정안은 가족 관계(「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³⁾)에 있는 조합원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 조합원수를 3인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이는 소규모 가족 단위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경우 법인 설립에 제약이 있어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임.

현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

【 농업법인에 대한 주요 세제 지원 】

구분		세제지원 내용
국 세	법인세 (2026.12.31.까지) ※조특법 §66, §68	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전액 면제
		②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소득 : 면제 - 영농조합법인 : 6억원(1인 한도)×조합원 수×(사업연도 월수÷12) ×소득금액÷수입금액 이하의 금액 - 농업회사법인 : 50억원×(사업연도 월수÷12) ×소득금액÷수입금액 이하의 금액
		③ 작물재배업소득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면제

- 1)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2) 이하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살펴봄.
- 3)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4)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 등이 설립한 법인임.

구분		세제지원 내용
		- 영농조합법인 : 1,200만원×조합원 수×(사업연도 월수÷12) 이하의 금액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 각 호의 사업소득 - 농업회사법인 :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 다음 4년간 50% *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 가목~마목의 사업소득,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부가가치세 ※조특법 §105, §105의2 §106, §106의2	①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2025.12.31.까지) ②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③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2026.12.31.까지) ④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2026.12.31.까지)
	양도소득세 (2026.12.31.까지) ※조특법 §66, §68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 초지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감면한도 : 연 1억원, 5개년 2억원) * 현물출자하는 농지, 초지가 소재하는 (연접)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초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적용 *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연접)시군구 또는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
	배당소득세 (2026.12.31.까지) ※조특법 §66, §68	①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전액 면제 ②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소득, 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감면 - 영농조합법인 : 배당소득 1,200만원까지 면제, 초과 배당소득은 5% 저율(기본 14%) 분리과세(종합소득과세표준 비합산) - 농업회사법인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취득세 (2026.12.31.까지) ※지특법 §11	①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청년농업법인은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 농지, 농지 조성용 임야,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가축사육시설 및 부속시설, 저온창고, 상온창고, 농기계보관용 창고,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②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026.12.31.까지) ※지특법 §11	과세기준일 현재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5인 이상의 조합원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인 가족 경영 제도 법인 설립을 통해 농업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24년 5월 기준으로 가족농 3~4명으로 구성된 농업경영체 수는 전체의 1.9%인 3만 4,093개⁵⁾로 파악되고 있음.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첫째, 당초 농업법인제도를 도입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한 입법 취지가 가족농 중심 구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농업법인의 육성·지원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농업법인제도는 이농과 고령화에 의한 농업노동력의 양적·질적 저하, 시장개방에 의한 값싼 수입농산물 확대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1990년에 도입⁶⁾된 것으로서, 농가 호당 경작규모 확대로는 영농규모화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가족농 중심 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농업법인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⁷⁾.

둘째, 당초 취지를 확장하여 3인으로 구성된 가족농까지 법인 설립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인으로 구성된 가족농과의 세제 혜택 차등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농인 부모와 자녀 두 명 이상

5) 농업경영체 180만 9천 개 중('24.5월 기준) 중 가족 3인 경영체 31,138개(1.7%), 4인 경영체 2,955개(0.2%)임.

6) 1990. 4. 7.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시행

7) 김정호·이성호·박문호. 1997.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P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용호·임준혁. 2019. 12. 『농업법인 제도와 운영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함께 영농을 하다가 고령농이 사망하여 소유 농지가 두 명 이상에게 상속되는 경우 농지 세분화 우려가 있고, 농업경영 효율화(가계·경영의 분리, 회계 관리 및 법인세 신고 등 경영 투명성 제고 등)를 통한 원활한 영농승계를 도모하기 위해 3~4인의 가족으로 구성된 농가의 법인화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⁸⁾.

따라서 가족경영체에 대한 영농조합법인 설립 특례 부여 여부는 당초 농업법인제도의 도입 취지와 가족경영체의 현실적 여건, 농지 세분화 방지 및 원활한 영농승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8)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농조합법인과 유사한 일본 농사조합법인의 경우 3명 이상의 농민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2. 농업법인 등에 대한 통계조사 실시 근거 및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농업법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국세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도 마련하고 있음.

현행	주철현의원안
<신설>	제20조의6(통계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사업유형, 출자, 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법인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 행	주철현의원안
	1. <u>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u> 2. <u>사용 목적</u> 3. <u>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u> ④ <u>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u> ⑤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통계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통계조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⑥ <u>그 밖에 통계조사의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이 2000년부터 수행하던 농업법인 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4049호)를 2016년에 이관⁹⁾받은 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라 함) 위탁을 통해 매년 통계조사를 수행 중임¹⁰⁾.

9) 2000년에 지정통계로 승인되어 2015년까지 통계청에서 수행하여 왔음.

10)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동 조사의 목적은 농업법인의 생산구조와 운영형태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농업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 중 ‘법인세 신고자료가 있는 활동법인’이며, 조사항목은 매출액, 출자금, 종사자수, 자산과 부채, 경영 경지면적 등임¹¹⁾).

그런데 통계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비롯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¹²⁾의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통계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임.

이에 개정안은 농업법인 등에 대한 통계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특히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¹³⁾에 따라 국가행정기관

11) 농림축산식품부, 농정원. 2025.5. 「2023년 기준 농업법인조사보고서」 p3~5, 보고서상 조사결과 개관은 참고자료 참조

12) 농식품부에 따르면, 통계조사를 위한 자료로는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 외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농업법인 등기전산자료, 통계청이 보유한 기업통계등록부 등이 있음.

1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8. <생략>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의 목적이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제공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경우 관계 기관의 원활한 자료 협조를 통해 통계조사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하고 통계조사의 정확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 제3항제3호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등’의 범위에 대하여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실제 통계조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에 한정되므로 정보 제공 요청 범위를 이로 특정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415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참 고 자 료

